

# 『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(2020. 3. 2. 시행)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(안 제8조)
- 선정대리인 신청·통지 신설(안 제9조)
- 선정대리인의 의무·우대 등 신설(안 제10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3조의2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2조의2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‘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’ 도입 등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(2020. 3. 2.)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,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·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(과세전 적부심사)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,
- 복잡한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사, 변호사,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세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